Vol. 08
2024.08. 23.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CONTENTS

Ⅰ. 법령 개정사항
Ⅱ. 조세심판사례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가산세의 감면 (제42조의 2)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족세액의 10%)의 3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족세액의 10%)의 20%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6조의 2)	우회덤핑을 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제116조의6)	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4.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시행일

‘24.07.01.

2.「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관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 (제1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관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 (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 (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 · 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 · 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 (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 · 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 (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 ·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3) 시행일

'24.07.01.

3.「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미한 변경 행위의 판단 (제20조의 2)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세 등 환급 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종전 연 1천분의 30)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제37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

3) 시행일

‘24.07.01. / ’24.07.31.

Ⅰ. 법령 개정사항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제조용 원유 등 할당관세 적용기간	24년 6월 30일까지 →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	5퍼센트 → 0퍼센트 인하
계란가공품, 조주정 등 27개 물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오랜지농축액 등 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	- 24년 6월 30일까지 →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적용

(3) 시행일

'24.07.01.

5.「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탄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간	- 24년 6월 30일까지 → 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 Kg당 193원 인하폭 축소
천연가스/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간	24년 6월 30일까지 → 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3) 시행 일자

'24.07.01.

Ⅰ. 법령 개정사항

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식품위생법」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3조 또는 제24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시행 일자

'24.07.01.

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함.**

(3) 시행 일자

'24.07.01.

Ⅰ. 법령 개정사항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사항 확인 또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매자의 특성, 구매·사용실태, 소비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범위로 하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을 추가하고, 축산물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및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6)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4조의7)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피해경험,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행 일자

'24.07.01.

Ⅰ. 법령 개정사항

9.「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 · 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 일자

’24.07.18.

Ⅰ. 법령 개정사항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법 제37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영 제19조의4)	법 제37조의2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3) 시행 일자

’24.07.24.

Ⅰ. 법령 개정사항

11. 「전파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 · 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추가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 · 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면책 (제29조의2)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3)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 1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 · 수입 · 판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 ·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 · 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 · 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시행 일자

’24.07.24.

Ⅰ. 법령 개정사항

1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기자재의 부적합 보고를 한 자가 스스로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를 정하고,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제53조의4 및 별표 5의2 신설)	1)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이 외의 재산상 손실 및 생명·신체상의 손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하고,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 및 부상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함. 2)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사항 (제77조의3제4항/제77조의4제2항 신설)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명칭·모델명, 기자재의 고유번호,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등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자기적합확인을 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부적합 보고 및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제77조의14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를 하고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정처분이 취소인 경우에는 4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 일자

’24.07.24.

Ⅰ. 법령 개정사항

1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제7조 개정)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제8조 개정)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제8조 개정)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 (별표 1·2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시행 일자

'24.07.30.

Ⅱ.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 8415.90-0000 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8.10.19.부터 2019.3.22.까지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TUBE-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12 건으로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8415.90-0000 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 광양세관장은 2023.4.19.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은 2023.7.4.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FCN1 5.8%~5.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고, 광양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 7608.10-0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0.13. 처분청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2023.10.1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9.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별지 1>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3) 결정일
2024.06.26 (조심 2024 관 0008)

2.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10.13. 및 2023.2.9. 스페인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호 등 2 건으로 CIG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허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이하 "수입신고용 송품장"이라 한다)상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3.6.16.부터 2023.9.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Annual Fee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연간 미화 OOO 달러(2022 년도분 및 2023 년도분 합계액 OOO 달러)(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는 독점판매권 대가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서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신고 차액 OOO 달러(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3.9.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쟁점금원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23.9.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 및 가산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경정 ·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의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쟁점물품 대금과 구분되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06.21 (조심 2024 관 0010)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ontrol Ar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ARM ASSY LWR LH - 품목분류3과-874 ('23.02.13) 2. ARM ASSY LWR RH - 품목분류3과-876('23.02.13) 3. NB-3ARMSOCKET - 품목분류3과-6501 ('19.08.21) 4. SOCKET FOR KALOS LOWER ARM - 품목분류3과-6500 ('19.08.21) 5. ARM ASSY ANCHOR.LH - 품목분류1과-2887 ('17.07.25) 6. ARM ASSY- UP.LH (54410-4E001) - 품목분류1과-2890 ('17.07.25) 7. CARRIER ASSY-RR; 52710-B1000; - 품목분류1과-1092 ('16.05.26) 8. Suspension arm - 품목분류1과-735 ('16.04.15) 9. ARM COMPL-TRANSV LWR LH - 품목분류1과-2043 ('15.11.19) 10. ARM COMPLETE LOWER, - 품목분류3과-1685 ('15.06.25)
물품 설명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HS CODE	-변경 전 : 제8708.99-9000호 (8%) -변경 후 : 제8708.80-0000호 (8%)
변경 사유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Ball Join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BALLJOINTASSY - LWR ARM - 품목분류3과-877 ('23.02.13) 2. SOCKET FOR L-CAR BALLJOINT - 품목분류3과-6495 ('19.08.21) 3. BALLJOINTASSY - 품목분류1과-734 ('16.04.15) 4. BALL JOINT HOUSING - 품목분류1과-733 ('16.04.15) 5. Ball Stud Cover - 감정22701-956 ('88.05.09)
물품 설명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볼조인트(ball joint)와 부분품
HS CODE	-변경 전 : 제8708.99-9000호 (8%) -변경 후 : 제8708.80-0000호 (8%)
변경 사유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 (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3. Bush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Bushing Mount - 품목분류과-102634 ('05.01.07) 2. BUSHING-UPPER ARM - 품목분류1과-15 ('18.01.03) 3. Pivot Bushing(56mm) - 품목분류1과-1150 ('13.05.29) 4. Bush rubber;14005 - 품목분류2과-2274 ('12.04.03) 5. Suspension Bush; 40097 - 품목분류2과-2275 ('12.04.03)
물품 설명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쉬(bush)
HS CODE	-변경 전 : 제8708.99-9000호 (8%) -변경 후 : 제8708.80-0000호 (8%)
변경 사유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4.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U.S.A - 품목분류2과-5448('14.08.08)
물품 설명	농축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환원한 과실주스에 안정제, 설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종이제 튜브에 슬러시 형태로 주입하면서 급속냉동
HS CODE	-변경 전 : 제2009.90-1020호 (A 50% / P3 10%) -변경 후 : 제2105.00-9010호 (8%)
변경 사유	슬러시 형태로 급속냉동하여 얼음 결정 조직이 형성된 빙과류로최종 소비까지 냉동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제2105.00-901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5. 인쇄용 금속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aint; Conductive silver paste TS LESV0321; R.KOREA - 품목분류2과-4239('15.06.12.)
물품 설명	은(silver) 입자, 용매, 바인더 등으로 혼합·조제된 도전성 페이스트
HS CODE	-변경 전 : 제3208.90-9019호 (6.5%) -변경 후 : 제3215.90-5000호 (6.5%)
변경 사유	인쇄용 금속잉크에 해당하므로 제3215.90-5000호에 분류 (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6.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시크릿 3D 티아라폰 - 품목분류3과-7405 ('21.12.28.) 2. 시크릿 3D 티아라폰 - 품목분류3과-10188 ('19.12.19.) 3. 스티커 체인지폰+핸드백 - 품목분류3과-1981 ('19.03.12.) 4. 시크릿 셀카폰 - 품목분류3과-2588 ('15.09.17.)
물품 설명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등
HS CODE	-변경 전 : 제9503.00-3919호 (8%) -변경 후 : 제9504.50-9000호 (0%)
변경 사유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7.29.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 『2024년 세계인정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월 9일(화) 「2024년 세계인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산업발전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 국표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93~)

세계인정의 날(Wor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

이날 기념식에서 반도체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공인 성적서 발행을 통해 반도체 수출 지원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큐알티 주식회사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전기로를 통한 고품질 철강제품 시험·평가 활동에 참여한 현대제철 백상진 책임 등 7명이 장관 표창, 지능형로봇 데이터상호운용성 시험기준 개발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광주테크노파크 김현 선임 등 7명이 국표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LS일렉트릭 이정준 고문은 주제강연에서 EU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디지털제품여권*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검증기관 육성 등 대응체계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표시하는 것(제품탄소발자국, 성능, 원산지, 원료물질, 재활용방법 등)

진종욱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인정제도'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혁신기술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시험부터 탄소배출 검증에 이르기까지 KOLAS 인정제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KOLAS 인정제도와 시험인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한-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발효 합의

- 안덕근 장관, 사우디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과 회담
- 비즈니스 포럼에 250여 명 참석, 사업기회 발굴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사우디 상무장관 회담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화),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 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안 장관은 지난 2 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2.11 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3.10 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 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 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GCC 회원국들(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6 개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

한편 같은 날 오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상무부 주최, 양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동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14:00~16:00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 참석했다. 사우디측에서는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 산업광물부, 투자부, 교통물류부, 데이터인공지능청 정부 고위 관계자, 기업인 등 총 80 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코오롱, 현대차그룹 등 100 여 개 기업에서 17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사우디 측에서 참가한 알조마이(열병합, 수소사업, 발전사업 등), 압둘아지즈 사우드 아부나얀 트레이딩(폐기물 재활용), 알야마마(자동차) 등은 그간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로서 '22.11 월(서울)과 '23.10 (리야드) 당시 체결했던 계약·양해각서(MOU)의 적시 이행과 추가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GCC FTA 타결에 의해 한국과 중동지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우디 측의 관심을 반영하듯 사우디의 의료 서비스 기업(Medical Choice Establishment, Alarfaj medical company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Alrafia Entertainment 등), 식품기업(United Regional company 등)이 대거 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양국의 협력이 "사우디 비전 2030 의 경제 다변화 전략에 발맞춰 자동차, 조선 같은 기간산업까지 확대되고", "한-GCC FTA 로 상품 교역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영화, 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와 한-GCC FTA 의 조속한 발효 추진 등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지원

- 수출 5대 핵심업종 수출목표 상향 … 반도체 1,350억 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 K-뷰티·K-푸드 230억 불
- 수출 확대, 고금리 등 적기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 370조 원(+5조원) 공급
- 하반기 역대 최대 수출전시회 253회 집중 개최 수출기업 1만개 사(社) 지원
-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등 하반기 4대 수출 리스크 관리 철저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화),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 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하였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 ①시중은행 협력기반 중소 특화패키지 우대금융(은행금융상품+무보보험·보증) 4,833억 원 지원,
②해외인증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186 → 190개) 등

** 해상운임비 상승에 대응한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5,000TEU 이상) 추가 투입 등

*** 자동차흑연 대상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26년), 바이오한-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MRA 체결 등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①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③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④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⑤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①반도체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②자동차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③석유화학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④K-푸드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⑤중소기업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①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②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③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24.12월). ④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 지재권 분쟁 증가 대응, 신속하고 공정한 입증방식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운영규정*을2024.7.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①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예) 조사개시결정일이 '24.7.18.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개정 전)'21.1.1~'24.7.17 → (개정 후)'21.7.18~'24.7.17

②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하였다.

③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 및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 및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 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142종 제·개정

- 국내·외 기준이 없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자동 혈액형 판정장치 및 수혈용 혈구 응집 검사시약' 등 7종의 국가표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 '의료용 전기기기', '마취 및 호흡기기', '치과' 분야 등 135종의 국제조화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고자 의료기기 분야 142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7월 18일 행정예고하고 9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① 의료용 전기기기 등 12개 분야 40종 제정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취 및 호흡기기', '치과' 등 12개 분야 33종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용 전기기기', '외과용 이식재' 분야 용어집 등을 신설한다.

특히 국제표준이 없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와 '자동 혈액형 판정장치 및 수혈용 혈구 응집검사 시약' 등 7종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해 신설한다.

* 기존 전동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개발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연속 주행 시험'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신설해 신뢰성을 확보
** 수혈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됨에도 국내외 기준이 없는 '자동 혈액형 판정장치 및 수혈용 혈구 응집검사 시약'에 대한 분석적 성능 평가 지침을 선제적으로 신설

② 진단 영상기기 등 16개 분야 95종 개정, 5개 분야 7종 폐지
'구강 외 엑스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42종에 국제표준을 반영해 개선하고, '외과용 기구' 등 53종에 대해 표준서식 및 용어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표준의 국제조화를 추진하며,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용어집 신설·제정 추진에 따른 중복 표준 정비 등 7종은 폐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의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제안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업계의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유통 의료기기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국가표준→KS 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 22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금)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수) 개정하였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5.1.1.)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붙임 2 참조)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